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85
----------	-------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김기표 · 문진석 · 김성희
김영배 · 권철승 · 한민수
맹성규 · 서삼석 · 서미화
문금주 · 김원이 · 강준현
이연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생계부담과 양육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 수준이 매우 큼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상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5항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 표 중 “맞벌이 가구”를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홀벌이 가구””를 ““홀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를 “배우자 없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부모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제100조의5제1항제3호 중 “맞벌이”를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2호 중 “맞벌이”를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제5항, 제100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홀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3. 4. (생략)

② ~ ④ (생략)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홀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생략)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홀벌이 가구	3천200만원
<u>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u>	4천400만원

3.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홀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배우자 없이-----

가구

1) ~ 3) (생략)

<신설>

3. (생략)

⑥ · ⑦ (생략)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2. (생략)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 ⑤ (생략)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2의2. 한부모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3.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

-----.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② (현행과 같음)